

경우보다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언론보도에 위협적 효과(chilling effect)를 미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감시라고 하는 근대적 저널리즘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재진, 2002b).

앞에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소가 1999년의 결정에서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여 공적 인물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법원의 판례들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다(배금자, 2002). 예컨대 대전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하여 검사 22명이 집단으로 MBC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MBC의 해당 보도가 법조계 전체의 고질적 비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룬 점에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도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한 검사들이 그 보도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해 준 것은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분명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보도 관련 명예훼손 소송 건수나 손해배상 인용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 역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명예훼손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민주화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손해배상 인용액이 늘기는 했어도 일부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보전적 배상에 그치고 징벌적 배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인용액을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조준원, 2000).

바람직하기는 우리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폭넓게 용인하는 쪽으로 가되,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언론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 왜곡하거나 기본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무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적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신청과 명예훼손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다. 언론사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언론윤리 및 법제 교육과 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사내에 옴부즈맨이나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상시적인 비평과 검토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처럼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권 침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단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론사는 즉각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언론사들이 시도하고 있지만, 사내에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피해구제를 위한 우리의 독특한 제도로서 그 편리성을 인정받아 자리를 확고히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는 그러한 논의가 법제화로 결실

을 맺어 보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때로는 자유로운 보도활동에 위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민주화된 사회에 걸맞게 공직자나 공인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예훼손 판결의 기준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언론자유 남용을 막기 위해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고의적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금자(2002),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23(2), 22-36.

서정우(2000), “오보의 발생과 대책,”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지방토론회 발표원고.

성낙인(2002),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언론중재, 23(2), 4-21.

양경승(2001),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21(1), 6-16.

양삼승(2000),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2000년도 정기세미나 주제논문집. 49-82.

언론중재위원회(1996),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에 관한 연구.

이수형(2002),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서울: 나남, 295-327.

이승선(2000),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언론종사자 책임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27호, 82-133.

이재진(2002a),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0)2, 73-110.

이재진(2002b),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 추이 비교-한미일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3(2), 37-51.

임병국(1999), “명예훼손 소송의 실태,” 관훈저널, 71호, 210-220..

조준원(2000), “1990년대 언론관계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4), 33-53.

한동원(2001), “중재신청 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언론중재, 21(1), 29-38.